

의무소방원 급대용품 지급카드(제75조제4항관련)

(앞 면)

의 무 소 방 원			계 급		군 번		성 명		본인날인		확인날인	
급대용품 지급 카드												
이 동 상 황					20 . . .							
20 . . .						20 . . .						
지 급 품 목												
품 명		규격	기준 (수량/년)	군입소(교)기간		1차 보급		2차 보급		3차 보급		비고
				수량	지급일	수량	지급일	수량	지급일	수량	지급일	
근 무 모												
기동복	하											
	동											
근무복	하											
	동											
활동복	하											
	동											
춘추잠바												
동 잠 바												
방 한 복												
조 끼												
기 동 화												
운 동 화												
단 화												
우 의												
넥 타 이												

201mm×297mm(보존용지(1종)120g/m²)

(뒷 면)

품 명	규격	기준 (수량/년)	군입소(교)기간		1차 보급		2차 보급		3차 보급		비고
			수량	지급일	수량	지급일	수량	지급일	수량	지급일	
넥타이핀											
요 대											
박 클											
이 름 표											
팬 티											
런닝셔츠											
면 양 말											
모 양 말											
동 내 의											
손 수 건											
가죽장갑											

- ※ ① 본 카드는 군입소 교육기간과 복무기간에 통용 지급되는 급대여품을 기록 유지한다.
- ② 본 카드는 군 교육기관 교육수료 후 의무소방원 각자가 휴대하고 배치되는 소방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.
- ③ 본 카드는 물품관리관이 보관 유지한다.
- ④ 카드 상단란 확인날인은 최초 작성관이 날인한다.
- ⑤ 물품을 지급할 때에는 수량과 지급 날짜를 기재하고 수령자는 지급 연월일란에 날인 확인한다.